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』 민간위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0일 /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9. 23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미숙 식품산업과장)

가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❍ 어린이 및 사회복지 단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포항시Ⅰ어린이·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만료일(2024.12.31)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제안사유

❍ 포항시Ⅰ어린이·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및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정하는 기관 및 법인에 재위탁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.영양 수준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제안근거

❍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
❍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 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

❍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5조 (승인 및 동의)

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

3. 주요내용

❍ 위탁사무명 : 포항시Ⅰ어린이·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❍ 위탁사무내용 :

-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- 위생·영양관리 교육자료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운영
- 맞춤형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, 레시피 제공, 영양 및 식사 지도
-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·컨설팅
- 그 밖에 어린이·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❍ 위탁기간 :2년 (2025. 1. 1. ~ 2026. 12. 31.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명권)

- 본 동의안은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를 ‘포항시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’에 위탁·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**포항시Ⅰ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**는 238개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(북구

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, 남·북구 지역아동센터, 남·북구 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, **포항시 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**가 지도·관리하는 시설은 남구지역 158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, 남북구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 복지시설임.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, 「포항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.

-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,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-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 및 전문성,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사무의 연관성 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양질의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·감독과 운영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